

관할권 이원 해양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관한 고찰*

이창열** · 조아영***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tudy on Subjects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hangyoul Lee** · Ah Young Cho***

** , ***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핵심용어 :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방법, 발동요건,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 남극환경보호의정서

Key Words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creening Method, Threshold, UNCLOS Article 206,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1. 서론

국가들은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육지와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해 또는 심해저와 같은 관할권 이원의 사업에 대하여도 국제적 기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유엔총회 결의 69/292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문서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는 관할권 이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준비위원회 회의의 여러 논의 중에서 평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2. 평가 대상 선정의 두 가지 방법

환경영향평가를 요하는 활동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요하는 활동을 목록으로 정해두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국내 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일정한 발동요건(threshold)을 정하고 그 기준에 달하거나 넘는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스크리닝(screening)이라고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의 경우 제206조에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 오염 또는 심각하거나 해로운 변화”를 줄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초과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세 가지의 발동요건을 두고 있으며, 각 요건에 따라 다른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3. 스크리닝에 의한 평가 대상 선정 및 보완책

목록을 지정하는 방법은 평가의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합의가 쉽지 않은 다자문서에서 목록을 정하는 방법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준비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약 제206조의 발동요건에 따른 스크리닝 방법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스크리닝 방식의 단점인 불확실성은 추후 전문가 그룹에 의한 권고 또는 지침 형태로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관할권 이원의 환경영향평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가능한 국가 관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문서 틀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 이 논문은 발표를 위한 미완성의 초고로써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므로 인용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 Changyoul Lee : winkstone@kiost.ac.kr

*** Ah Young Cho : ahyoung0707@kiost.ac.kr